

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번호	제430호 관련
------	-------------

제안연월일: 2026년 6월 16일
제안자: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

1. 수정 이유

- 자치법규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명 및 조례명의 오류를 바로잡아 조례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함.
- 사용료의 반환 관련 적용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향후 조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.

2. 수정 내용

- 안 제17조제1항제9호 중 잘못 인용된 「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」를 「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로 정정함.
 - 「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조례」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소지자
➔ 「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소지자
- 안 제17조제1항제10호 중 잘못 인용된 「북한이탈주민법」를 「북한

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로 수정함.

- 「북한이탈주민법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

➡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

○ 안 제17조의2 본문 “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.”를 “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.”로 수정함.

-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.

➡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.

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7조제1항제9호 중 「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조례」를 「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로 한다.

안 제17조제1항제10호 중 「북한이탈주민법」를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로 한다.

안 제17조의2 본문 “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.”를 “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.”로 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17조(사용료의 감면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략) 4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5. ~ 9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 설></p> <p>10.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② (생략)</p> <p>제17조의2(사용료의 반환)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. 1. ~ 3. (생략)</p>	<p>제17조(사용료의 감면)① ----- ----- ----- --. 단,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은 개인이 본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, 단체의 행사 또는 활동을 위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삭 제> 5. ~ 8. (현행과 같음) 9. 「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조례」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소지자 10. 「북한이탈주민법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11. (현행 제10호와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7조의2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17조(사용료의 감면) ① ----- ----- ----- --. 단,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은 개인이 본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, 단체의 행사 또는 활동을 위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삭 제> 5. ~ 8. (현행과 같음) 9. 「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소지자 10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11. (현행 제10호와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7조의2(사용료의 반환)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. 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